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Characteristics of Tax Forecasting Error and Efficient Management Plan

정재진

CONTENTS

연구요약

| | |
|------------------------|----|
| 01 서론 | 01 |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
| 02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과 함의 | 05 |
| 제1절 세수추계 오차와 발생이유 | |
| 제2절 과소추계 오차의 양면성 | |
| 03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 11 |
| 제1절 세수추계 오차 발생 현황 | |
| 제2절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 |
| 04 수원시 세수추계 효율적 관리 방안 | 27 |
| 제1절 경기도 사례 분석 | |
| 제2절 수원시 세수추계 효율적 관리 방안 | |
| 05 결론 | 33 |
| 참고문헌 | 37 |
| 부 록 | 39 |

연구요약

연구 목적

-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지방재정 현장에서 오차가 갖는 함의 등 오차의 양면성을 파악,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 수원시와 유사단체 세수추계 오차의 시계열·횡단면 분석을 통한 비교, 특이사항 도출, 개선점 제시
- “(가칭)세수추계위원회”의 효과적 운용 방안 및 세수추계 고도화 방안 제시

주요 내용 및 결과

-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
 - 세수추계 오차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①기술적·통계적으로 오차율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②지방재정 특성상 오차는 추경, 본예산 당겨 사용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가능하며, ③오차율이 0일 경우 지방세 납부와 시 금고 납입 간 시차 등으로 인해 연초 재정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오차율 약 10% 이내에서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된다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안정성, 탄력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음
- 세수추계 오차발생 분석 결과 및 특징
 -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는 유사단체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나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재원의 특성에 따라 오차율의 차이가 발생되어 오차가 큰 분야에 대한 정교한 예측 필요
 - 자주재원보다는 이전재원에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서 오차율이 큼
 - 세수추계 오차는 모두 과소추계이며 당초예산보다 최종예산에서의 오차가 작음
- 수원시 세수추계의 절차와 방식은 현 수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추계모형의 고도화 및 세수추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 필요

정책제언

-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오해의 해소
 - 의회 예결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고를 통해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 그리고 합의에 대한 공유
 -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예산안 첨부자료 제출 시 발생 가능한 오해 소지 해소
 -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또는 자치대학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필요
- 세정부서 자체적으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수원시는 세외수입의 오차가 크다는 특성을 가짐. 따라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을 세정과에 부여하거나 해당 업무에 세정직렬을 배치하는 방안 고려
 - 이전재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경기도와 협업 체계 구축 및 세수추계 자문위원 활용
- 세수추계의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가외적(redundancy) 모델 개발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 현재 수원시가 활용하는 진도비기법을 보완하고, 경제적 특수성과 수원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한 회귀방정식 개발을 통해 예측의 안정성 확보
- 세수추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실행 계획 마련
 -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세정부서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위원 구성) 집행부 3명, 의회 3명, 전문가 4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 역할) 국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세수추계 고도화 자문
 - (의원의 역할) 세입여건 변화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수원시 재정여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회의 예산 심의시 세입 예측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효율적인 의결이 가능토록 함.
 - (전문가 역할) 상시적으로 세입추계 전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세정부서가 판단하여 필요시 적기에 자문을 받도록 함.
 - (위원회운영) 본예산 편성 시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개최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여건을 고려, 서면운영

주제어: 세수추계 오차, 세수추계자문위원회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¹⁾

1 연구 배경

-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세입에 대한 정확한 판단임.
 - 세입추계는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제약(budget restrict)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입추계의 정확성은 재정운용의 계획성, 안정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임(최병호·이근재, 2016 ; 임재훈·문광민, 2018).
- 행정안전부는 2022년에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고, 추계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음의 사안을 권고함.
 -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관심제고와 정교한 분석을 유도할 목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세수추계위원회” 설치를 권고함.
 - 세수추계 결과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검토·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 제출 시부터 세입추계 분석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음.
- 세입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차는 발생됨.
 -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추계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통계학적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해 어떠한 모델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음.
 - 지방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현실에서 고려하기도 어렵거니와 현 시점에서 고려되지 못한 미래의 발생될 사건을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불가능함(Simon, 1972).
 - Boyd & Dadayan(2014)은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극대화시키고, 기술적 방법론을 고도화할지라도 재정에서의 세입오차는 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정의함.

1) 본 연구는 수원시 세정과에서 주제를 의뢰받아 시행한 정책연구임

2 연구 목적

- 세수추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거나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증하고, 오차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어 왔음.
 -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접근은 주로 통계적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회귀방정식 모델을 개발하거나, 세목별 오차율을 검토하여 개별 예측 분석 도출에 초점을 둠.
 - 오차로 인한 문제점 검증은 과소예측과 과대예측을 구분하여 각각의 상태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정도, 재정지출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
 - 오차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들은 오차의 전략적 활용을 전제로 경제·정치·기술적 맥락에서 각각의 요인들이 오차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현장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 기능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속성을 갖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오차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단순히 줄여야만 하는 대상으로서 세수추계 오차를 접근하기보다 지방재정의 흐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이 연구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해 이론과 지방재정의 현장을 접목하여 접근하여 오차가 갖는 함의를 재해석 하고, 수원시 차원에서 오차의 적정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둠.
 - 지방재정운용과정에서 세수추계 오차의 의미와 활용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
 - 세수추계 오차 발생의 수준과 특성을 유사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시함.
 -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세수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 (내용적 범위)

- 지방재정에서 세수추계 오차가 갖는 함의 도출
- 수원시 세수오차에 대한 진단과 특징 분석, 경기도 및 유사단체 세수추계 방법 등 사례 분석
- 수원시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대안 제시

□ (시간적 범위)

- 세수추계 오차의 특징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자료 이용

□ (대상적 범위)

- 세수오차 특징 분석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유사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추진
- 세수추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써 “세수추계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운영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광역 수준에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석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세수추계 오차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지방재정에 있어 세수추계 오차의 함의 분석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비교 분석

□ (통계 분석)

- 세수추계 오차 수준 및 특징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방법 적용
-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I유형), 최종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II유형)을 구분하여 분석

□ (자료 구득)

-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료와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관련 자료 등을 비교 분석 함.

02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과 함의

제1절 세수추계 오차와 발생이유

1 세수추계 오차

- 세수추계 오차²⁾는 당초 예측한 세입 대비 실제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납입된 세입의 차이를 말함.
 - 일반적으로 세수추계 오차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의 차이로 정의되며,
 - 오차액은 당초 세입예산-세입결산으로, 오차율은 (당초 세입예산 - 세입결산) / 세입결산으로 정의됨(강태구, 2004; 배상석, 2013; 사명철·이상훈, 2016; 최병호·이근재, 2016).
- 최근에는 최종예산까지 포함해 세수추계 오차의 특징을 분석하는 사례가 등장함.
 - 2019년부터 ‘지방재정분석지표’에 포함된 세수추계 오차 비율 산정 공식은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상 오차와 최종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상 오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음.
 - ‘지방재정분석’에서 세수추계 오차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진단됨.
 - $\{(당초 세입예산/세입결산) \times 60\% + (최종 세입예산/세입결산) \times 40\%$
- 세수추계 오차는 오차의 특성에 따라 과소추계와 과대추계로 구분됨.
 - 과소추계는 실제 납입된 세입보다 작게 세입을 예측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과대(과잉)추계는 실제 납입된 세입보다 크게 세입을 예측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함.
 - 과소 예측할 경우 재정투입의 적시성이 하락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되는 세입만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부문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하락하게 됨.
 - 과대세입을 예측할 경우 재원이 이미 투입된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 등이 불가피하게 되고, 기존에 투입된 재정은 매몰비용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 후생을 악화시키게 됨.

2) 일반적으로 세입오차에 대한 발생 원인은 경기변화 및 변동에 따른 예측의 실패와 경기변화를 고려한 인식적 조정, 선거 등에 직면한 의도적 조정, 관련 변수를 모두 포함해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의 부재, 공무원의 전문성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음(배상석, 2013).

그림 2-1 | 세수추계 오차의 종류와 특징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 오차 현황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이후 2021년까지 지방세입은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음³⁾(사명철·이상훈, 2016).
 - 이하 논의에서는 과소추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며, 과소추계에 따른 양면성을 검토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 과소추계 발생 이유

- 과소추계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도성을 갖고 과소추계를 한다는 의견과 의도성과는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과소추계가 발생된다는 의견이 공존함.
 - 지방세입의 특수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선택 측면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Golosow and King, 2002; 강태구, 2004; 박완규, 2005; 배상석, 2013).
- 지방세입의 특수성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제 불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세입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섬.
 - 지방소비세는 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일정 공식에 의해 배분받는 구조로 국가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 지방소득세는 국내외 경기변동, 수출여건, 기업의 영업이익과 안분율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 재산세는 국가정책 목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시가격 변동에 의해, 취득세는 국가 부동산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조세감면 등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3) 지방재정에서 세수추계 오차는 대부분 과소추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과대추계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한계⁴⁾ : 정치·경제 등 미래의 제반 환경을 모두 예측하지 못함.
 - 국가도 매년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되는데, 세무행정담당 몇 명이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긴축 시기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예상하지 못 했듯이 미래의 사건을 현 시점에서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국가, 광역의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의 크기는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선택 : 남으면 질타를 받지만 모자라면 재난이라 인식
 - 공공재 공급은 계획적·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함. 실제 예측보다 세입이 적게 납부되면 기존의 사업을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항에 직면하게 됨.
 - 특히 순환보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부서는 공직사회 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저항에 매우 민감함.
 -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재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의 긴급 추진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과소추계를 선호하게 됨⁵⁾.
-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과소추계가 발생원인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통제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구분됨⁶⁾.
 - 지방세입의 특수성과 예측의 한계는 예측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
 - 지방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대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한다 할지라도 누락되는 요인은 발생될 수밖에 없음.
 - 재정을 전략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맥락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방향 또는 재정투입 계획 등에 의해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함.

4)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을 대상으로 세추추계 오차를 연구한 Afonso and Carvakho(2013)는 예측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함. 경제적 요인은 거시경제 및 GDP 등 경제 변수에 대한 예측 실패, 정책적 요인은 세목, 세율 등에 대한 정책적 조정에 따른 오차발생, 기술적 요인은 경제 및 정책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로 정의함.

5) 가용재원이 적어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이근재·최병호, 2016).

6) 전술한 세 가지 범주 이외에도 박충훈(2018)은 기술혁신,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비나 원료비의 하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절감 노력은 과대추계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봄.

제2절 과소추계 오차의 양면성

1 • 지방재정 특징과 과소추계

- 과소추계 발생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입제출의 속성을 갖는 지방재정의 구조에 기인함.
 - 지방재정은 과세권을 갖지 못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과세 대상, 종류, 세율의 결정권 모두 국가가 권한을 갖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세입 내에서 세출을 조정하게 됨.
 - 만약 예산계약선으로서 세입을 과대 편성하여 재정의 탄력성이 최소화 되었는데, 실제 세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면 공공재 공급은 제약 됨.
 - 양입제출의 속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과소추계를 고려하였다고 볼 필요가 있음(배상석, 2013).
- 지방재정 입장에서 과소추계는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
 - 이론상 지방세입액의 오차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편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상 불가능함.
 - 오히려 적정수준에서의 과소 추계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음.
 - 물론 책임성의 저하, 도덕적 해이의 발생 등과 같이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구조적으로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과소추계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임.
 - 일례로 코로나19에 직면하여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때 활용된 재원은 과소추계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가 반영된 바 있음.

2 • 과소추계 오차의 양면성과 함의

- 이론상으로 세수추계 오차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으로 판단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이하 :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정운용의 계획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함.

-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은 항상 맞물려 돌아가고, 추경은 당초 예산에서 전망한 세입의 월별 초과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함으로써 단순히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이만큼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님.
- 예산운영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단일예산원칙⁷⁾으로부터 추경예산을 예외로 두는 이유도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함임.
- 과소추계를 통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안임.
- 과소추계를 할 경우 재정투입의 적시성이 훼손될 수는 있으나 이론에서와 같이 재정책임성과 투명성이 하락되는 부정적 요인만이 있는 것이 아님.

표 2-1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 과정에서의 활용 자원

| 구분 | | 시기 | 활용 자원 |
|----|---------------|---------------|---|
| 1 | 2022년 예산집행 | 2022. 1월부터 | 2022년 월별 목표액 대비 실 수납액 점검 |
| 2 | 2022년 1회 추경 | 2022. 4월(예시) |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목표 대비 초과세입액 |
| 3 | 2022년 2회 추경 | 2022. 7월(예시) |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목표 대비 초과세입액 + 2021년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편성 잔액 |
| 4 | 2023년 당초예산 편성 | 2022. 8월~12월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측 + 2022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
| 5 | 2022년 마무리 추경 | 2022. 10월(예시) |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초과세입액 + 연말까지 예상 세입액 |
| 6 | 2023년 예산 집행 | 2023. 1월부터 | 2023년 월별 목표액 대비 실 수납액 점검 |
| 7 | 2023년 1회 추경 | 2022. 7월(예시) |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목표 대비 초과세입 + 2022년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편성 잔액 |

- 과소추계가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초과세입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재정운용절차상 과소추계 중 이미 현실화된 자원은 추경에 사용되는 반면, 마무리 추경에서 예측한 10월, 11월, 12월에 발생하는 초과세입액은 결산상잉여금을 형성하게 됨.
-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이월금(명시, 사고, 계속비)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빼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도출됨.

7) 단일예산의 원칙은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 원칙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자칫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침해할 수 있고, 중앙 또는 광역으로부터 이전되는 자원의 비중이 월등히 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원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음. 이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예산편성이 가능토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순세계잉여금 산식 〉

$$\text{순세계잉여금} = \text{결산상잉여금(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 \text{이월금(명사·사고·계속비)} + \text{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 순세계잉여금은 과소추계에 따른 초과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순세계잉여금은 법적 측면에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거한 지방채원리금 상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실질적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 역시 전술한 추가경정예산편성과 같이 예산체계에 있어 하나의 예외로 인정되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함(이미애·이현우·홍윤미, 2018),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공시 편람에서도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22a).
- 과소추계 오차가 재정운영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2 | 지방재정운영상 세수추계 오차의 활용과정



- 현실에서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되면 연초에 재정지출의 문제가 발생됨.
 - 시 금고의 자금 운영은 시세의 납입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함. 세수추계 오차가 “0”이 되면 실제 세입이 연말까지 100이라고 했을 경우 금고에 100이 연말까지 들어오지 않고 카드 또는 타 은행 현금수입은 적게는 1일, 많게는 13일 뒤에 세입이 들어오므로 연말에 계획된 세출금액 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연초에도 금고에 집행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어도 지출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종합하면, 양입제출의 속성을 갖는 지방재정에서 적정수준의 오차는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03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제1절 세수추계 오차 발생 현황

1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세수추계 오차

- '지방재정분석' 지표상 최근 3년간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는 100점 만점에 89.77점 수준임.
 - 세수추계 오차가 가장 작았던 해는 2020년으로 2019년 대비 1.88%p 만큼 오차가 줄었음.
 - 세수추계 오차가 가장 컸던 해는 2021년으로 2020년 대비 7.68%p 만큼 오차가 증가되었음.
- 수원시와 비교 대상 유형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3년 평균 오차는 100점 만점에 91.43점 수준으로 수원시보다 오차수준이 1.66%p 만큼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3년 평균 오차는 100점 만점에 89.30점으로 수원시보다 오차 수준이 0.48%p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 | '재정분석' 상 최근 3년간 세수추계 오차 현황



8)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를 인구나 재정 등을 고려해 유형화 하여 분석함. 수원시는 경기도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 김해시와 같은 유형에 포함되어 있음(행정안전부, 2022b). 다만, 연구의 논리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기서의 유형평균은 인근 유사자치단체로 한정함.

표 3-1 | '재정분석' 상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

| 구분 | 2019(가) | 2020(나) | 나-가 | 2021(다) | 다-나 | 3년 평균 |
|---------|---------|---------|-------|---------|-------|-------|
| 실적(A) | 91.08 | 92.96 | 1.88 | 85.28 | -7.68 | 89.77 |
| 유형평균(B) | 93.83 | 94.73 | 0.90 | 85.73 | -9.00 | 91.43 |
| 전국평균(C) | 92.51 | 89.73 | -2.78 | 85.65 | -4.08 | 89.30 |
| (A-B) | -2.75 | -1.77 | | -0.45 | | -1.66 |
| (A-C) | -1.43 | 3.23 | | -0.37 | | 0.48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각년도

- 비교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추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D시의 세수추계 오차가 100점 만점에 94.31점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A시의 오차가 가장 낮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D시가 가장 높음.
- 수원시는 유사단체와 비교 시 최하위 수준은 아니나 유사단체 평균 대비 세수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수추계 오차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3년간 모두 B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 '지방재정분석' 상 유사단체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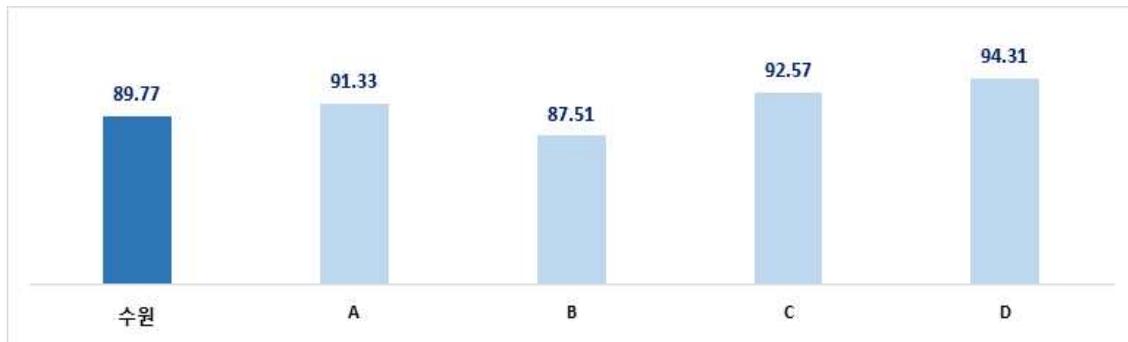


표 3-2 | '재정분석' 상 유사단체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

| 구분 | 수원 | A | B | C | D | 유사단체 평균 |
|-------|-------|-------|-------|-------|--------|---------|
| 2019 | 91.08 | 96.28 | 89.23 | 96.51 | 93.29 | 93.83 |
| 2020 | 92.96 | 91.13 | 90.92 | 95.45 | 101.46 | 94.74 |
| 2021 | 85.28 | 86.59 | 82.39 | 85.74 | 88.19 | 85.73 |
| 3년 평균 | 89.77 | 91.33 | 87.51 | 92.57 | 94.31 | 91.43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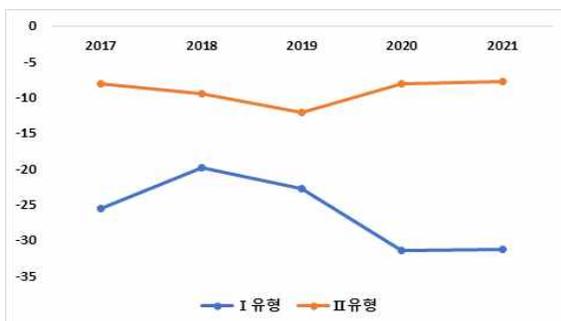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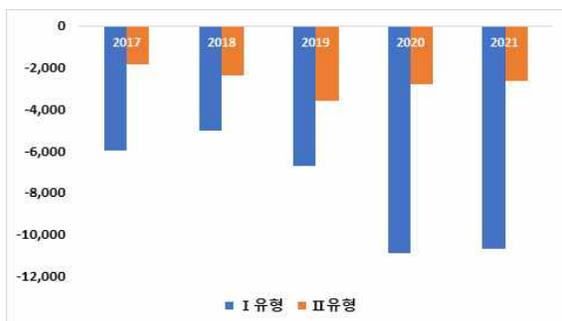
주 : 당해연도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중 세수추계 오차가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붉은색으로 처리, 오차가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파란색으로 처리, 이하 유사단체 분석에 있어서는 동일

2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분석

1) 세입 총량 기준(자주재원 + 이전재원)

-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 기준(이하 I 유형 오차)⁹⁾ 최근 5년간 수원시 평균 오차액은 7,868억원 규모이며 오차율은 26.7% 수준임.
 - 모든 오차는 과소추계에 따른 오차이며, 오차액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임.
 - 최근 5년간 오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오차가 감소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오차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최종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 기준(이하 II 유형 오차)¹⁰⁾ 최근 5년간 수원시 평균 오차액은 2,649억원 규모이며 오차율은 9.0% 수준임.
 - 모든 오차는 과소추계에 따른 오차이며, 오차액이 가장 큰 해는 2019년임.
 - 2019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는 모두 오차율이 10% 이내로 줄어듦.
- 유형 I 과 유형 II를 비교함에 따라 도출 가능한 함의는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 초과세입이 구조적으로 경직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임.
 - 만약 추경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오차율은 26.7%로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용 상태에 직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입을 추경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림 3-3 | 최근 5년간 I 유형 오차액·오차율 그림 3-4 | 최근 5년간 II 유형 오차액·오차율



9) I 유형의 오차액은 당초 세입예산 - 세입결산으로 산정하며, 오차율은 (당초 세입예산 - 세입결산액) / 당초 세입예산으로 산정

10) II 유형의 오차액은 최종 세입예산 - 세입결산으로 산정하며, 오차율은 (최종 세입예산 - 세입결산액) / 최종 세입예산으로 산정

표 3-3 | 세입 총량 기준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2017 | 17,338 | 21,450 | 23,304 | -5,966 | -1,854 | -25.6 | -8.0 |
| 2018 | 20,256 | 22,933 | 25,300 | -5,045 | -2,367 | -19.9 | -9.4 |
| 2019 | 22,795 | 25,928 | 29,498 | -6,704 | -3,570 | -22.7 | -12.1 |
| 2020 | 23,849 | 31,939 | 34,753 | -10,904 | -2,814 | -31.4 | -8.1 |
| 2021 | 23,553 | 31,633 | 34,274 | -10,721 | -2,640 | -31.3 | -7.7 |
| 평균 | 21,558 | 26,777 | 29,426 | -7,868 | -2,649 | -26.7 | -9.0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 유사단체와 비교 결과 I 유형의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며, B시가 가장 작음.
 - 오차율을 살펴보면 D시의 오차율이 가장 큰 것은 동일하나 수원시의 오차율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II 유형의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며,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C시임.
 - 오차율은 D시가 가장 크고, C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C시와 수원시만이 오차율 10% 이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 | 유사단체 I 유형 오차액·오차율



그림 3-6 | 유사단체 II 유형 오차액·오차율



표 3-4 | 세입 총량 기준 수원시와 유사단체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수원 | 21,558 | 26,777 | 29,426 | -7,868 | -2,649 | -26.7 | -9.0 |
| A | 17,896 | 23,037 | 26,108 | -8,212 | -3,070 | -31.5 | -11.8 |
| B | 19,382 | 24,112 | 26,940 | -7,558 | -2,828 | -28.1 | -10.5 |
| C | 20,728 | 26,903 | 29,290 | -8,562 | -2,386 | -29.2 | -8.1 |
| D | 18,190 | 23,902 | 28,412 | -10,221 | -4,510 | -36.0 | -15.9 |
| 유사단체 평균 | 19,049 | 24,489 | 27,688 | -8,638 | -3,199 | -31.2 | -11.6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주 : 유사단체 비교는 5년 평균값이며, 구체적인 수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이하 유사단체 비교 표는 동일 방법 적용

2) 재원 유형¹¹⁾ 기준 세수추계 오차

- 자주재원 기준으로 오차를 분석한 결과 I 유형은 평균 오차액이 2,097억원으로 오차율이 16.9% 수준이고, II 유형은 평균 오차액이 568억원으로 오차율이 4.6% 수준임.

 - I 유형은 2020년 오차액과 오차율 모두 가장 낮았으나 2021년 들어 최근 5년간 가장 큰 오차액과 오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II 유형은 I 유형에 비해 오차액과 오차율의 큰 변동은 없으나 2020년 이후 현재까지 5%대를 유지하고 있음.
- 이전재원 기준으로 오차를 분석한 결과 I 유형은 평균 오차액이 5,771억원으로 오차율이 33.9% 수준이고, II 유형은 평균 오차액이 2,082억원으로 오차율이 12.2% 수준임.

 - I 유형은 2020년 오차액과 오차율이 모두 가장 높았으며, 2021년 들어 근소한 감소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큰 수준임.
 - II 유형은 2019년까지 오차율이 10%대를 넘겼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10% 이내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임.
- 전반적으로 자주재원 대비 이전재원에 대한 오차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주재원 대비 이전재원 평균 오차액은 최소 1,514억원에서 3,674억원 규모이고, 평균 오차율은 최소 7.6%에서 17.0% 만큼 더 큰 것으로 나타남.

11) 재원 유형은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되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였고, 이전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국고기금, 균특회계 등)으로 정의함.

그림 3-7 | 수원시 자주재원 유형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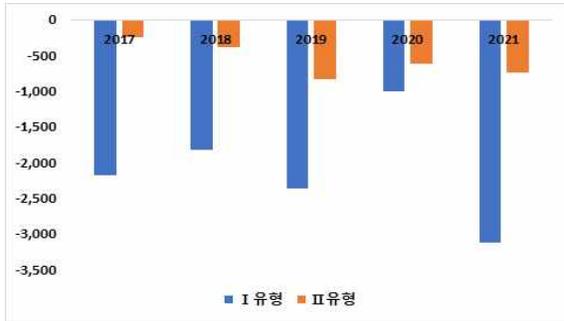


그림 3-8 | 수원시 자주재원 유형별 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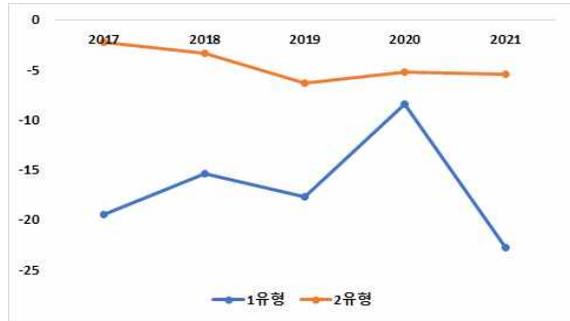


그림 3-9 | 수원시 이전재원 유형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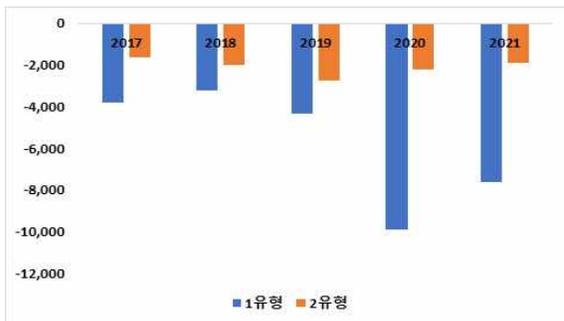


그림 3-10 | 수원시 이전재원 유형별 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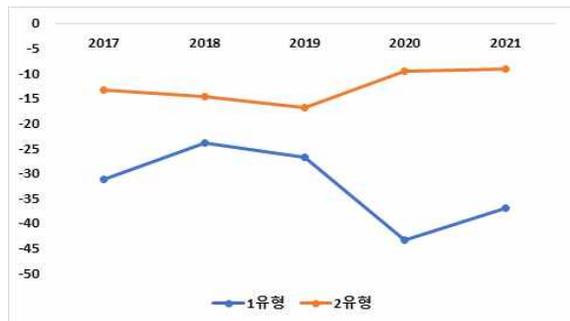


표 3-5 | 재원유형별 수원시와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 자주 재원 | 2017 | 8,993 | 10,922 | 11,173 | -2,180 | -250 | -19.5 | -2.2 |
| | 2018 | 9,989 | 11,418 | 11,804 | -1,815 | -386 | -15.4 | -3.3 |
| | 2019 | 10,961 | 12,488 | 13,326 | -2,365 | -838 | -17.7 | -6.3 |
| | 2020 | 10,957 | 11,340 | 11,961 | -1,004 | -621 | -8.4 | -5.2 |
| | 2021 | 10,560 | 12,938 | 13,680 | -3,120 | -742 | -22.8 | -5.4 |
| | 평균(가) | 10,292 | 11,821 | 12,389 | -2,097 | -568 | -16.9 | -4.6 |
| 이전 재원 | 2017 | 8,346 | 10,528 | 12,131 | -3,786 | -1,603 | -31.2 | -13.2 |
| | 2018 | 10,267 | 11,515 | 13,496 | -3,229 | -1,981 | -23.9 | -14.7 |
| | 2019 | 11,834 | 13,440 | 16,172 | -4,338 | -2,732 | -26.8 | -16.9 |
| | 2020 | 12,893 | 20,599 | 22,792 | -9,900 | -2,193 | -43.4 | -9.6 |
| | 2021 | 12,993 | 18,695 | 20,594 | -7,600 | -1,898 | -36.9 | -9.2 |
| | 평균(나) | 11,266 | 14,955 | 17,037 | -5,771 | -2,082 | -33.9 | -12.2 |
| 차이(가-나) | -974 | -3,134 | -4,648 | 3,674 | 1,514 | 17.0 | 7.6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I 유형 내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C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A시임. 오차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B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D시임. II 유형 내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B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C시임. 오차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A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C시임.

 - I 유형 기준 수원시는 유사단체 평균 대비 오차액과 오차율 모두 높은 수준임.
 - II 유형 기준 수원시는 유사단체 평균 대비 오차액과 오차율 모두 낮은 수준임.
 - 이를 통해 볼 때 수원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의 전략적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전재원을 기준으로 I 유형 내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B시임. 오차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임. II 유형 내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B시임. 오차율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D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임.

 - 수원시는 I 유형과 II 유형 모두에서 오차액이 유사단체 평균보다 낮고, 오차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사단체 중 이전재원에 대한 예측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주재원보다는 예측의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및 경기도 정책방향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이를 고려한 예측의 정교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유사단체도 수원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자주재원의 오차율보다 이전재원의 오차율이 유형에 상관없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주재원 대비 이전재원의 오차율은 10.0%에서 27.0%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1 | 유사단체 I 유형 자주자원 오차액·오차율



그림 3-12 | 유사단체 II 유형 자주자원 오차액·오차율



그림 3-13 | 유사단체 I 유형 이전자원 오차액·오차율



그림 3-14 | 유사단체 II 유형 이전자원 오차액·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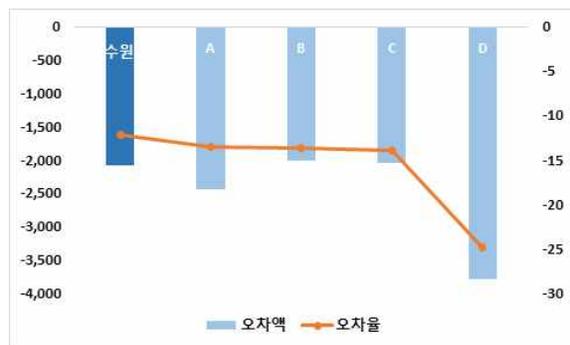


표 3-6 | 자원 유형별 유사단체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 자주 자원 | 수원 | 10,292 | 11,821 | 12,389 | -2,097 | -568 | -16.9 | -4.6 |
| | A | 6,845 | 7,429 | 8,054 | -1,209 | -626 | -15.0 | -7.8 |
| | B | 10,213 | 11,475 | 12,299 | -2,086 | -824 | -17.0 | -6.7 |
| | C | 12,228 | 14,163 | 14,495 | -2,267 | -332 | -15.6 | -2.3 |
| | D | 11,556 | 12,378 | 13,096 | -1,540 | -717 | -11.8 | -5.5 |
| | 유사단체 평균(가) | 10,211 | 11,361 | 11,986 | -1,776 | -625 | -14.9 | -5.6 |
| 이전 자원 | 수원 | 11,266 | 14,955 | 17,037 | -5,771 | -2,082 | -33.9 | -12.2 |
| | A | 11,050 | 15,608 | 18,053 | -7,003 | -2,445 | -38.8 | -13.5 |
| | B | 9,168 | 12,637 | 14,641 | -5,473 | -2,004 | -37.4 | -13.7 |
| | C | 8,500 | 12,740 | 14,795 | -6,295 | -2,054 | -42.5 | -13.9 |
| | D | 6,635 | 11,524 | 15,316 | -8,681 | -3,793 | -56.7 | -24.8 |
| | 유사단체 평균(나) | 9,324 | 13,493 | 15,968 | -6,645 | -2,476 | -41.9 | -15.6 |
| 차이(가-나) | 887 | -2,132 | -3,982 | 4,869 | 1,851 | 27.0 | 10.0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3) 자주재원 기준 세수추계 오차

- 자주재원 중 지방세를 대상으로 세수 추계 오차 특징을 살펴보면 I 유형의 평균 오차액은 1,479억원으로 오차율이 14.4% 수준임. II 유형의 평균 오차액은 385억원으로 오차율은 3.8% 수준임.

 - I 유형 중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한 해는 2021년으로 2,493억원의 오차가 발생되었고, 오차율은 21.8% 수준임.
 - II 유형 중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한 해는 2020년으로 539억원의 오차가 발생되었고, 오차율은 5.5% 수준임.
- 자주재원 중 세외수입을 대상으로 세수 추계 오차 특징을 살펴보면 I 유형의 평균 오차액은 618억원으로 오차율이 28.7% 수준임. II 유형의 평균 오차액은 182억원으로 오차율은 8.5% 수준임.

 - I 유형 중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한 해는 2017년으로 1,104억원의 오차가 발생되었고, 오차율은 42.8% 수준임.
 - II 유형의 가장 큰 오차가 발생한 해는 2019년으로 351억원의 오차가 발생되었고, 오차율은 15.9% 수준임.
-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오차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오차발생액은 지방세가 세외수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오차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세외수입 오차율이 지방세 오차율 대비 큰 이유는 세외수입 자체가 갖는 세원의 특성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의 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¹²⁾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표적으로 재산매각, 보조금 반환, 기타 수입 등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은 세정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운영계획을 세정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제공된 자료의 합을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임. 그 결과 세입 예측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음.

12) 2021년부터는 통계목 신설을 통해 과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분리해 2023년 현재 세외수입은 경상, 임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개의 관을 갖고 있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됨.

그림 3-15 | 수원시 지방세 유형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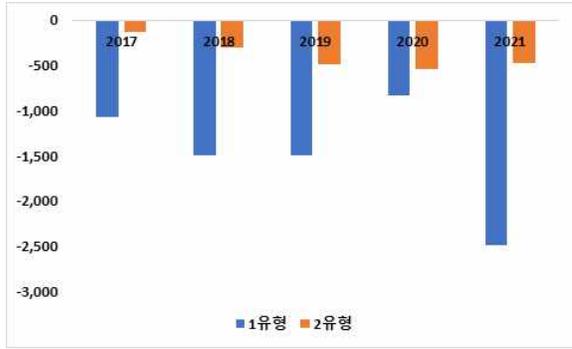


그림 3-16 | 수원시 지방세 유형별 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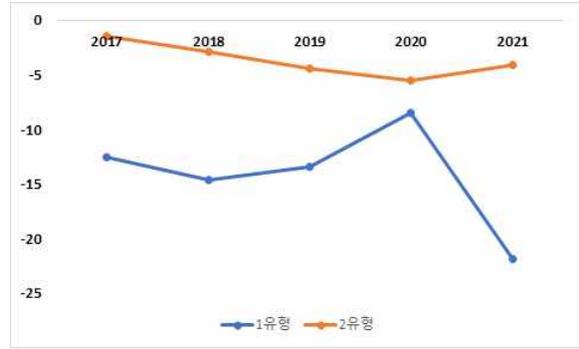


그림 3-17 | 수원시 세외수입 유형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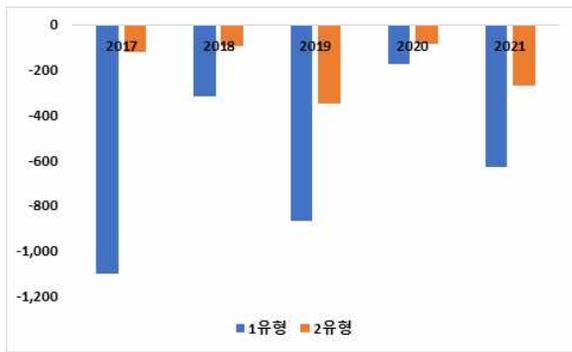


그림 3-18 | 수원시 세외수입 유형별 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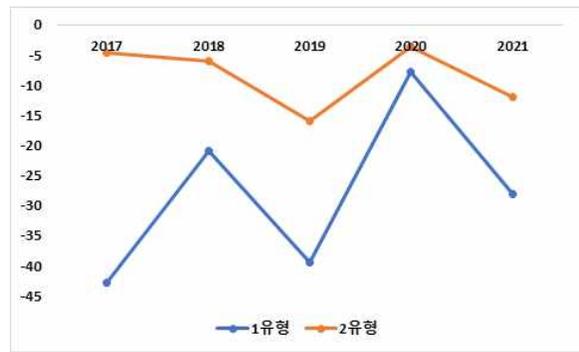


표 3-7 | 자주재원 기준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연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지방세 | 2017 | 7,516 | 8,461 | 8,593 | -1,076 | -131 | -12.5 | -1.5 |
| | 2018 | 8,797 | 10,002 | 10,296 | -1,500 | -295 | -14.6 | -2.9 |
| | 2019 | 9,622 | 10,630 | 11,117 | -1,495 | -487 | -13.4 | -4.4 |
| | 2020 | 8,907 | 9,200 | 9,739 | -832 | -539 | -8.5 | -5.5 |
| | 2021 | 8,950 | 10,970 | 11,443 | -2,493 | -473 | -21.8 | -4.1 |
| | 평균(가) | 8,758 | 9,853 | 10,238 | -1,479 | -385 | -14.4 | -3.8 |
| 세외수입 | 2017 | 1,476 | 2,461 | 2,580 | -1,104 | -119 | -42.8 | -4.6 |
| | 2018 | 1,192 | 1,416 | 1,508 | -316 | -92 | -21.0 | -6.1 |
| | 2019 | 1,339 | 1,858 | 2,209 | -870 | -351 | -39.4 | -15.9 |
| | 2020 | 2,050 | 2,140 | 2,221 | -172 | -82 | -7.7 | -3.7 |
| | 2021 | 1,610 | 1,968 | 2,237 | -627 | -269 | -28.0 | -12.0 |
| | 평균(나) | 1,533 | 1,969 | 2,151 | -618 | -182 | -28.7 | -8.5 |
| 차이(가-나) | | 7,225 | 7,884 | 8,087 | -861 | -203 | 14.3 | 4.7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 유사단체의 지방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I 유형에서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A시임. 오차율은 수원시가 가장 크고, D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II 유형 에서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B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C시임. 오차율은 A시가 가장 크고, C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오차액과 오차율 모두 I 유형에서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크고 II 유형에서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유사단체의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I 유형에서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C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D시임. 오차율은 B시가 가장 크고, D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II 유형 에서 오차액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이고,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D시임. 오차율은 A시가 가장 크고, D시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는 오차액과 오차율 모두 I 유형에서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작고 II 유형에서는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사지방자치단체도 수원시와 같은 모습을 보임. 오차액의 경우 유형과 관계없이 지방세가 크고, 오차율은 유형과 관계없이 세외수입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 유사단체 I 유형 지방세 오차액·오차율



그림 3-20 | 유사단체 II 유형 지방세 오차액·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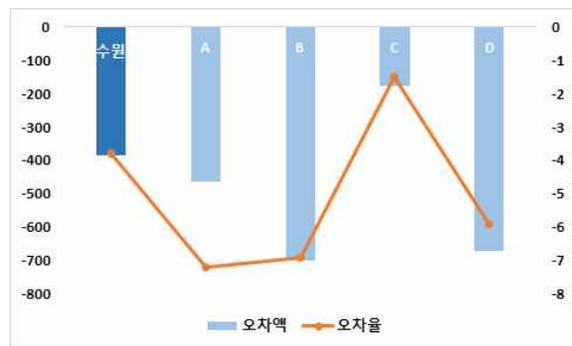


그림 3-21 | 유사단체 II 유형 지방세 오차액·오차율



그림 3-22 | 유사단체 II 유형 세외수입 오차액·오차율



표 3-8 | 자주재원 기준 유사단체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 지방세 | 수원 | 8,758 | 9,853 | 10,238 | -1,479 | -385 | -14.4 | -3.8 |
| | A | 5,723 | 6,002 | 6,465 | -742 | -464 | -11.5 | -7.2 |
| | B | 8,819 | 9,504 | 10,205 | -1,386 | -701 | -13.6 | -6.9 |
| | C | 10,126 | 11,345 | 11,523 | -1,397 | -178 | -12.1 | -1.5 |
| | D | 10,344 | 10,748 | 11,420 | -1,075 | -672 | -9.4 | -5.9 |
| | 유사단체 평균(가) | 8,753 | 9,400 | 9,903 | -1,150 | -504 | -11.7 | -5.4 |
| 세외 수입 | 수원 | 1,533 | 1,969 | 2,151 | -618 | -182 | -28.7 | -8.5 |
| | A | 1,122 | 1,427 | 1,589 | -467 | -162 | -29.4 | -10.2 |
| | B | 1,394 | 1,971 | 2,094 | -700 | -123 | -33.4 | -5.9 |
| | C | 2,102 | 2,818 | 2,972 | -870 | -154 | -29.3 | -5.2 |
| | D | 1,212 | 1,630 | 1,676 | -464 | -46 | -27.7 | -2.7 |
| | 유사단체 평균(나) | 1,458 | 1,962 | 2,083 | -625 | -121 | -30.0 | -6.0 |
| 차이(가-나) | 7,295 | 7,438 | 7,820 | -525 | -383 | 18.3 | 0.6 |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4) 지방 세목별 오차 현황

- 5년 평균 지방세목별 오차 현황을 살펴보면 오차액은 I·II 유형 모두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고, 지방소비세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오차율은 I 유형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가장 크고, 지방소비세가 가장 작으며 II 유형의 경우 주민세가 가장 크고, 재산세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¹³⁾.

표 3-9 | 최근 5년 평균 세목별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오차액 | | 오차율 | |
|--------------------|-------|-------|-------|--------|-------|-------|-------|
| | | | | I 유형 | II 유형 | I 유형 | II 유형 |
| 주민세 ¹⁴⁾ | 461 | 497 | 535 | -74 | -38 | -13.8 | -7.1 |
| 재산세 | 2,289 | 2,374 | 2,410 | -121 | -36 | -5.0 | -1.5 |
| 자동차세 | 1,539 | 1,553 | 1,616 | -77 | -62 | -4.8 | -3.8 |
| 담배소비세 | 649 | 677 | 706 | -57 | -29 | -8.1 | -4.1 |
| 지방소비세 | 43 | 43 | 44 | -1 | -1 | -2.3 | -2.3 |
| 지방소득세 | 3,709 | 4,621 | 4,888 | -1,179 | -267 | -24.1 | -5.5 |
| 지난년도수입 | 69 | 87 | 39 | 30 | 48 | 76.9 | 123.1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13) 지방세목별 분석에서 지난년도수입은 수치의 합을 위해 포함시키긴 하였으나 엄밀히 말해 지난년도 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해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고자 함.
 14) 일반적으로 주민세는 인두세적 성격이 강해 오차발생률이 작은 특징을 지니나, 수원시는 삼성전자라는 특수요인이 존재함. 즉, 주민세 중 삼성전자 종업원분의 편차가 크게 발행됨에 따라 오차가 발생됨

- 유형의 구분과 상관없이 오차액과 오차율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I 유형 기준 최근 5년간 오차액의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이고, 오차율의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임.
 - II 유형 기준 최근 5년간 오차액의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큰 세목은 지방소득세이고, 오차율의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큰 세목은 재산세임.

그림 3-23 | 최근 5년간 I 유형 세목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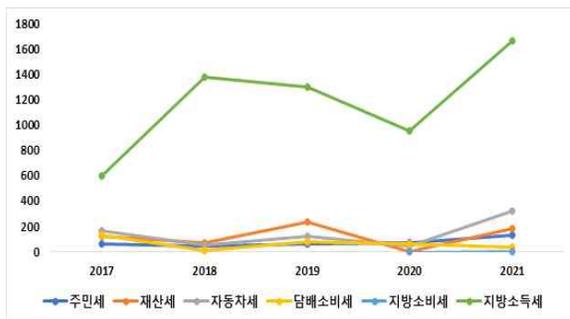


그림 3-24 | 최근 5년간 I 유형 세목별 오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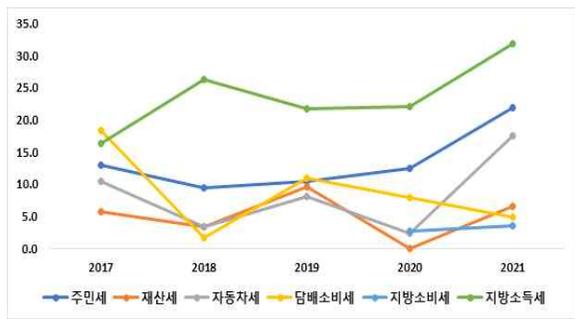


그림 3-25 | 최근 5년간 II 유형 세목별 오차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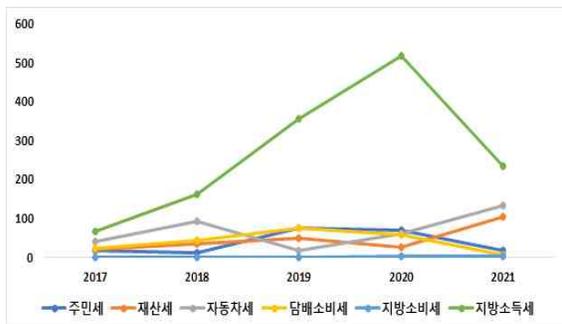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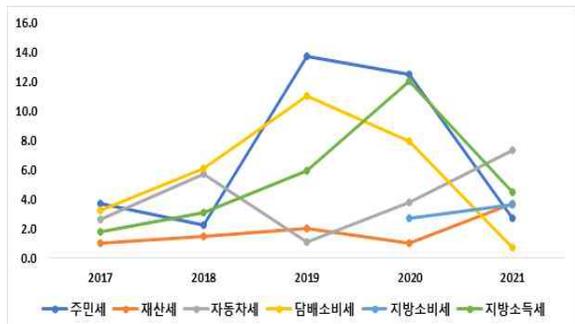


그림 3-26 | 최근 5년간 II 유형 세목별 오차율



-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수원시 세입에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1%로 지방소득세의 오차액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목 중 경제적 충격에 가장 민감하며, 입주한 사업장의 영업이익이 사전에 발표된다 할지라도 특별징수분과 같이 사업장의 자율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가 수원시세의 기간세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소득세의 오차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0 | 최근 5년간 세목별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2021 | | |
|--------------|--------|------|-------|--------|-------|--------|-------|------|--------|--------|--------|
| | 오차액 | 오차율 | 오차액 | 오차율 | 오차액 | 오차율 | 오차액 | 오차율 | 오차액 | 오차율 | |
| I 유 형 | 주민세 | -63 | -13.0 | -47 | -9.4 | -57 | -10.4 | -68 | -12.5 | -132 | -21.9 |
| | 재산세 | -118 | -5.7 | -72 | -3.3 | -230 | -9.6 | -1 | 0.0 | -183 | -6.5 |
| | 자동차세 | -164 | -10.5 | -55 | -3.4 | 118 | 8.1 | 39 | 2.4 | -323 | -17.6 |
| | 담배소비세 | -132 | -18.3 | 11 | 1.6 | -74 | -11.0 | -57 | -7.9 | -35 | -4.9 |
| | 지방소비세 | | | | | | | -3 | -2.7 | -4 | -3.6 |
| | 지방소득세 | -597 | -16.3 | -1,379 | -26.3 | -1,302 | -21.7 | -954 | -22.1 | -1,663 | -31.8 |
| | 지난년도수입 | -2 | -2.0 | 43 | 102.4 | 50 | 119.0 | 213 | -151.1 | -153 | -100.0 |
| II 유 형 | 주민세 | -18 | -3.7 | -11 | -2.2 | -75 | -13.7 | -68 | -12.5 | -16 | -2.7 |
| | 재산세 | -20 | -1.0 | -34 | -1.5 | -49 | -2.0 | 26 | 1.0 | -103 | -3.7 |
| | 자동차세 | -41 | -2.6 | -92 | -5.7 | 16 | 1.1 | -61 | -3.8 | -133 | -7.3 |
| | 담배소비세 | 23 | 3.2 | -43 | -6.1 | -74 | -11.0 | -57 | -7.9 | 5 | 0.7 |
| | 지방소비세 | - | | - | | - | | -3 | -2.7 | -4 | -3.6 |
| | 지방소득세 | -65 | -1.8 | -163 | -3.1 | -356 | -5.9 | -516 | -12.0 | -233 | -4.5 |
| | 지난년도수입 | -10 | -10.0 | 48 | 114.3 | 50 | 119.0 | 141 | -100.0 | 11 | 7.2 |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각년도

제2절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 세수추계 오차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재정분석상 진단 방식, ②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당초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의 차이를 통한 진단, ③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해 최종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의 차이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추진하였음.
- 분석결과 수원시 세수추계의 특징은 다섯 가지 수준에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는 유사단체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
 - 유사단체와 비교 시 I유형의 경우 오차율이 가장 낮고, II유형의 오차율은 5개 단체 중 두 번째로 작음.
 - 그러나 수원시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액은 I유형의 경우 7,868억원 규모이고, II유형의 경우 2,469억원 규모임.
 - 비록 오차율은 양호하다 할지라도 그 규모가 재정운용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어 오차액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세수추계 오차는 모두 과소추계이며, I유형 대비 II유형의 오차가 작음
 - 세수추계 오차는 모두 이론상으로는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양입제출의 특성을 갖는 지방재정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활용될 수 있음.
 - 당초 세입예산 대비 최종 세입예산의 오차액과 오차율이 동시에 낮아지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재정투입의 적시성은 하락할 수 있을 지라도 2019년부터 시작된 수원시 재정압박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I유형 오차율 26.7%에서 II유형 오차율 9.0%로 17.7%p가 감소하는 등 추경을 통한 탄력성의 확보 규모가 매우 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오차를 최소화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세수추계 오차가 연차별로 일관되게 발생되지 않음.
 - 현실적으로 세수추계 오차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증장기 전망을 충실히 하고, 미래 예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함.
 - 이는 한편으로 재정부서가 정치적·전략적으로 세수추계를 곡해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측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낮다는 측면도 함께 갖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오차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발생될 오차를 예상할 수 있다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크게 침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넷째, 자주재원보다는 이전재원의 오차가 큼

- 자주재원은 지금까지 세정부서에서 누적된 자료와 노하우에 기반하여 일정부분 예측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II유형 기준 5년 평균 오차율이 4.6% 수준으로 양호함.
- 이전재원은 중앙 또는 광역의 재정정책 정향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외생요인이 크다는 측면에서 예측의 가능성이 낮음. II유형 기준 5년 평균 오차율이 12.2%로 자주재원 대비 약 3배가량 큼.
- 이전재원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 또는 광역과 세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의 오차율이 큼.

- II유형 기준 지방세의 5년간 평균 오차율은 3.8% 수준인데 반해 세외수입은 8.5% 수준임.
- 세외수입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이유는 구조적 속성과 관리적 속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세외수입의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예측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04

수원시 세수추계 효율적 관리 방안

제1절 경기도 사례 분석

1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

-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는 크게 3단계 구성됨.
 - 세정부서에서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4가지 수준의 분석기법을 적용해 세입을 전망함.
 - 전망 자료에 근거 ‘세수추계자문위원회’ 개최, 논의 결과를 내부방침을 통해 확정된 뒤
 - 예산편성업무를 수행하는 예산담당관과 평생교육과에 이송하는 절차를 가짐.

표 4-1 |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

| | | |
|---|-----------|---|
| ① | 세수추계 | - 도 자체 추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시스템 추계,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 시·군 추계 집계 |
| ② | 세수추계 자문회의 | - 16명 내외 구성, 1회 개최, 2~3시간 내외 |
| ③ | 확정 및 통보 | - 세정과 → 예산담당관·평생교육과 공문 발송 |

자료: 이학연 외(2021) 재구성

2 경기도 세수추계 절차

1) 경기도 세수추계 방식

- 경기도 세수추계는 도 자체 추계,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시스템에 의한 추계,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용역), 시·군 추계 집계 방법을 활용함.
- 도 개별 추계 방식은 세목별 당해연도 징수예상액에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방식임. 이 방식은 진도비기법과 탄성치방식을

활용하나 정부정책 또는 경제 등 외부 변화가 클 때는 유용성이 하락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시스템상 세목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추계변수 항목에 자치단체 세정 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넣음으로써 예측하는 방식임. 5년 회귀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역시 오차가 발생됨.
- 한국지방세연구원 추계 방식은 세정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얻은 모형을 기준으로 매년 세수예측을 추가함. 이 모형은 경제성장률을 주로 활용하며, 전국 또는 경기도 변수 자료를 활용함.
- 시·군 추계 집계는 각 시·군에서 특수요인, 물량 등을 중심으로 예측해 경기도에 제출한 실적을 근거로 추계하는 방법임(한재명, 2022).

2) 세수추계자문회의의 구성·운영

-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의 구성은 담당국장 및 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의원 그리고 해당분야 전문가(부동산·금융·연구원 등) 등 약 15~16명 수준으로 구성됨.
 - 세수추계자문회의의 구성이 조례 또는 규칙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의 위촉 기준을 준용함.
 - 세수추계자문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도 세정과에서 4가지 기준에 의해 예측한 추계결과에 대한 토론 및 자문을 하는 기구임.
- 세수추계자문회의는 연 1회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의 소요시간은 대략 2시간 남짓임¹⁵⁾.
 -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세정부서는 추가로 참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한 경청을 하며, 참석한 위원들은 각 예측에 대하여 토의하는 과정을 거침.
 - 자문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각자 세정부서가 제출한 예측치 중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예측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게 됨.
 - 세수추계자문회의의 개최결과를 근거로 세정과는 최종 수정된 세입예측액을 내부결제 받아 관련 부서에 이송함으로써 예산편성을 위한 세입예측의 과정이 종료됨.

15) 이와 관련하여 이학연 외(2021)는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의 운영에 대한 진단에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못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단발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가깝다고 진단함.

제2절 수원시 세수추계 효율적 관리 방안

1 • 수원시 세수추계의 방법 및 절차

- 수원시 세수추계 절차는 세정 부서에서 노하우에 기반해 추계한 결과를 내부결재 받고, 이를 예산재정과로 이송시킴.
 - 이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자문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세정부서 직원의 전문성에 의존하는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수원시의 세수추계는 자체추계 방법을 활용함.
 - 과거 5년 치 월별 세입자료를 참고하여 세목별 진도비기법을 활용함. 이 과정에서 세입 특수요인을 가감하게 됨.
 - 지방소득세의 경우 삼성전자의 실적 분석 등을 통해 세입을 예측하며 정부의 정책(부동산 및 경제정책 등) 등을 참고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2 • 수원시 세수추계의 효율적 관리 방안

- 수원시는 광역에 비해 추계하는 방식의 수가 작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오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짐.
 - 유사단체와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원시의 오차율은 양호한 수준임.
 - 오차율이 크지 않은 이유는 조직·인사 행정의 특수성에 기인함. 그러나 이는 국가경제 규모의 증가, 복잡화, 정책적 조정 등이 활발해지는 미래 여건을 감안할 때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인사 측면에서 세무직은 사무관 이전까지 독립된 직렬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조직 측면에서 수원시는 4개의 다양성 있는 구청 등에서의 경험이 세수예측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해 현재와 같이 양호한 오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수추계 모형의 정교화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 추계 모형의 고도화

- 수원시는 진도비기법에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낮다는 속성이 있음.
 - 수원시가 사용하는 진도비기법은 현장의 공무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 이 모델은 당해연도 징수예산액에 거래 또는 가격 신장률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과거 대비 미래 예측 시 안정성을 전제함.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급변하게 되거나 미래에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예측의 정확성이 하락될 수 있음.
 - 또한 세수추계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에 매우 크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추가 모델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세수추계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6년 세수추계 연구용역을 수행한바 있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회귀모델을 근거로 매년 세수추계 결과를 경기도에 제공하고 있음.
 - 모형의 고도화는 예측 수단의 가외성(redundancy)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예측의 오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이학연 외, 2021).

2)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 세수추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세정부서의 관심과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함.
 - 세수추계위원회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피로도 증가 요인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함.
 - 위원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지가 성패를 결정함.
 - 경기도와 같이 조례 또는 규칙 등으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재정 여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운영 등을 기본으로 하는 운영규정 등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 구성 : 10명 내외
 - 집행부, 의회, 전문가를 각각 3:3:4 수준으로 구성

- (집행부) 경제국장, 세정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구성하여 시 재정에 대한 긴밀한 협조 및 공유가 가능토록 함.
- (의 회) 기획경제위원회 2명, 예결위원회 1명으로 구성
 - (예결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중 위촉 위원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전문가) 인구, 경제, 재정, 금융 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4명 내외에서 구성

□ 위원회 역할: 국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세수추계 고도화 자문

- (의원 역할) 예산안의 심의는 세입과 세출 모두를 포함함. 예산제약으로 기능하는 세입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세출의 효율적 편성이 가능함.
 - 위원회 참석 의원과 상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원시 세입상태를 공유하고, 세입예측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가 역할) 세수추계에 앞서 미래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상황 등에 대한 공유, 세수추계 과정에서 통계적·기술적 방법론의 지원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 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 및 재정 정책방향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 운영: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개최

-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하고 의견을 묻고, 심의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세수추계위원회는 세수추계 전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꾀해야 함.
- 다만, 운영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세수추계자문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05

결론

1 · 연구 결과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진행되었음.
 -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지방재정 현장에서 오차가 갖는 함의 등 오차의 양면성을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 세수추계 오차를 시계열·횡단면 분석을 통한 비교, 특이사항을 도출하며, 개선점을 제시하였음.
 - “세수추계위원회”의 효과적 운용 방안 및 세수추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수추계 오차의 다양한 접근 필요
 - 세수추계 오차는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임.
 - 그러나 ①기술적·통계적으로 오차율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②지방재정 특성상 오차는 추경, 본예산 당겨 사용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활용되며, ③오차율이 0일 경우 지방세 납부와 금고로의 납입 간 시차 등으로 인해 연초 재정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오차율 약 10% 이내에서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된다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안정성, 탄력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음.
- 수원시 세수추계 오차는 유사단체와 비교 시 양호한 수준이나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수원시 세입총액 오차율은 5년 평균 9.0% 수준으로 10% 이내에서 형성되고 있으나 수원시 재정규모가 크다는 것을 고려, 지속적인 오차율 축소가 필요함.
 - 세수추계 오차는 모두 과소추계이며, I 유형 오차율이 26.7%에서 II유형 오차율이 9.0%로 17.7%p가 감소하는 등 추경을 통해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추경을 통한 탄력성 확보가 상당히 커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오차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재원의 특성에 따라 오차율의 차이가 발생되어 오차가 큰 분야에 대한 정교한 예측 필요
 - 자주재원보다는 이전재원의 오차가 큼. 자주재원의 오차율은 5년 평균 4.6% 수준이나 이전재원의 오차율은 5년 평균 12.2% 수준임. 중앙-경기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이전재원에 대한 예측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의 오차율이 큼. 지방세의 5년간 평균 오차율은 3.8% 수준인데 반해 세외수입은 8.5% 수준임. 세외수입의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예측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수원시 세수추계의 절차와 방식은 현 수준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계모형의 고도화와 세수추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계획해야 함.
 - 진도비기법이 갖는 한계와 수원시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의 고도화를 통해 오차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요식적인 행위로서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세입예측의 고도화가 가능하고, 수원시 재정의 이해와 협치가 가능하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 • 정책제언

-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오해의 해소
 - 의회 예결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고를 통해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 그리고 합의에 대한 공유
 -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 2024년부터 적용되는 예산안 첨부자료 제출 시 발생 가능한 오해 소지 해소
 - 언론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세수추계 오차의 양면성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또는 자치대학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 필요
- 세정부서 자체적으로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수원시는 세외수입의 오차가 크다는 특성을 가짐. 따라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총괄관리기능을 세정과에 부여하거나 해당 업무에 세정직렬을 배치하는 방안 고려
 - 이전재원 오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경기도와 협업 체계 구축 및 세수추계 자문위원 활용
- 세수추계의 정교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가외적(redundancy) 모델 개발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 현재 수원시가 활용하는 진도비기법을 보완하고, 경제적

특수성과 수원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한 회귀방정식 개발을 통해 예측의 안정성 확보

□ 세수추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실행 계획 마련

- 세수추계자문위원회는 세정부서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 오차 최소화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함.

표 5-1| 세수추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구분 | 내용 |
|--------|---|
| 위원회 구성 | 집행부 3명, 의회 3명, 전문가 4명 등 10명 내외로 구성 |
| 위원회 역할 | 국내외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세수추계 고도화 자문 - (의원의 역할) 세입여건 변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를 이해도를 높이고, 수원시 재정여건에 합당한 의결을 유도, 예산편성 시 세입예측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함 - (전문가 역할) 상시적으로 세입추계 전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세정부서가 판단하여 필요시 자율적으로 자문을 받음 |
| 위원회 운영 | 본예산 편성 시 및 추가경정예산 편 성시 개최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여건을 고려, 서면운영 |

참고문헌

REFERENCE

국문 자료 |

- 강태구. (2004).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소추계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6권1호. pp. 93-112.
- 박완규. (2005). 지방세 추계오차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9권4호. pp. 235-258.
- 박종훈. (2018).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보조금 반환: 부유한 지방정부가 과연 더 많이 반환 하는가?. 『지방행정연구』. 제32권2호. pp. 119-154.
- 배상석.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22권1호. pp. 361-388.
- 사명철, 이상훈. (2016). 지방세수오차와 지방정부 예산 : 교부세 및 세출예산 중심으로. 『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109-125.
- 이근재, 최병호. (2016). 지방세 세수예측오차의 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제9권4호. pp. 167-207.
- 이학연, 이현우, 김진덕. (2021).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방법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이현우, 이미애, 홍윤미. (2018).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8권4호. pp. 481-502.
- 임재훈, 문광민. (2018). 세수추계의 오차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규모의 관계 분석 : 시와 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1호. pp. 97-127.
- 최병호, 이근재. (2016). 지방세수 추계 오차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3호. pp. 65-91.
- 한재명. (2022).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2a).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_____. (2022b).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_____. (각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해외 자료 |

- Afonso, A. and Carvalho, R. (2013). Revenue Forecast Errors in the European Union. 『Department of Economics, ISEG-UL』. Working Paper No. 02/2014/DE/UECE.
- Donald, J. B. and Lucy, D. (2014). 『State tax revenue Forecasting Accuracy』. The Public Policy Research Arm of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Golosov, M. and King, J. (2002). Tax Revenue Forecasts in IMF-Supported Programs. 『IMF』 Working Paper No. 02/236.
- Simon, H. A. (1972).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McGuire, C. and Radner, R. (eds.). Decision and Organization. Amsterdam: North-Holland.

부 록

APPENDIX

부록 1 | 연도별 수원시 및 유사자치단체 예·결산 현황 및 오차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수원시 | 2017 | 1,734 | 2,145 | 2,330 | -597 | -185 |
| | 2018 | 2,026 | 2,293 | 2,530 | -504 | -237 |
| | 2019 | 2,279 | 2,593 | 2,950 | -670 | -357 |
| | 2020 | 2,385 | 3,194 | 3,475 | -1,090 | -281 |
| | 2021 | 2,355 | 3,163 | 3,427 | -1,072 | -264 |
| | 평균 | 2,156 | 2,678 | 2,943 | -787 | -265 |
| A시 | 2017 | 1,300 | 1,655 | 1,946 | -646 | -291 |
| | 2018 | 1,578 | 1,862 | 2,203 | -625 | -341 |
| | 2019 | 1,805 | 2,314 | 2,619 | -814 | -305 |
| | 2020 | 2,117 | 2,838 | 3,175 | -1,058 | -336 |
| | 2021 | 2,149 | 2,850 | 3,112 | -963 | -262 |
| | 평균 | 1,790 | 2,304 | 2,611 | -821 | -307 |
| B시 | 2017 | 1,550 | 1,903 | 2,134 | -584 | -231 |
| | 2018 | 1,866 | 2,159 | 2,399 | -534 | -240 |
| | 2019 | 1,949 | 2,351 | 2,617 | -668 | -266 |
| | 2020 | 2,123 | 2,831 | 3,096 | -974 | -265 |
| | 2021 | 2,204 | 2,813 | 3,224 | -1,020 | -411 |
| | 평균 | 1,938 | 2,411 | 2,694 | -756 | -283 |
| C시 | 2017 | 1,709 | 2,075 | 2,308 | -599 | -233 |
| | 2018 | 2,053 | 2,279 | 2,494 | -442 | -215 |
| | 2019 | 2,089 | 2,341 | 2,634 | -544 | -293 |
| | 2020 | 2,162 | 3,200 | 3,382 | -1,220 | -182 |
| | 2021 | 2,351 | 3,557 | 3,827 | -1,477 | -270 |
| | 평균 | 2,073 | 2,690 | 2,929 | -856 | -239 |
| D시 | 2017 | 1,396 | 1,746 | 2,255 | -859 | -509 |
| | 2018 | 1,769 | 2,147 | 2,541 | -772 | -394 |
| | 2019 | 1,941 | 2,345 | 2,872 | -931 | -527 |
| | 2020 | 1,890 | 2,888 | 3,253 | -1,363 | -365 |
| | 2021 | 2,099 | 2,824 | 3,285 | -1,186 | -461 |
| | 평균 | 1,819 | 2,390 | 2,841 | -1,022 | -451 |

부록 2 | 연도별 수원시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2017 | 지방세 | 752 | 846 | 859 | -108 | -13 |
| | 세외수입 | 148 | 246 | 258 | -110 | -12 |
| | 합계 | 899 | 1,092 | 1,117 | -218 | -25 |
| 2018 | 지방세 | 880 | 1,000 | 1,030 | -150 | -29 |
| | 세외수입 | 119 | 142 | 151 | -32 | -9 |
| | 합계 | 999 | 1,142 | 1,180 | -182 | -39 |
| 2019 | 지방세 | 962 | 1,063 | 1,112 | -150 | -49 |
| | 세외수입 | 134 | 186 | 221 | -87 | -35 |
| | 합계 | 1,096 | 1,249 | 1,333 | -237 | -84 |
| 2020 | 지방세 | 891 | 920 | 974 | -83 | -54 |
| | 세외수입 | 205 | 214 | 222 | -17 | -8 |
| | 합계 | 1,096 | 1,134 | 1,196 | -100 | -62 |
| 2021 | 지방세 | 895 | 1,097 | 1,144 | -249 | -47 |
| | 세외수입 | 161 | 197 | 224 | -63 | -27 |
| | 합계 | 1,056 | 1,294 | 1,368 | -312 | -74 |
| 평균 | 지방세 | 876 | 985 | 1,024 | -148 | -39 |
| | 세외수입 | 153 | 197 | 215 | -62 | -18 |
| | 합계 | 1,029 | 1,182 | 1,239 | -210 | -57 |

부록 3 | 연도별 A시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2017 | 지방세 | 501 | 518 | 577 | -76 | -59 |
| | 세외수입 | 98 | 112 | 137 | -39 | -25 |
| | 합계 | 599 | 630 | 714 | -116 | -84 |
| 2018 | 지방세 | 562 | 562 | 619 | -58 | -58 |
| | 세외수입 | 103 | 118 | 146 | -43 | -28 |
| | 합계 | 664 | 680 | 765 | -101 | -85 |
| 2019 | 지방세 | 585 | 585 | 607 | -23 | -23 |
| | 세외수입 | 115 | 139 | 159 | -44 | -20 |
| | 합계 | 699 | 723 | 766 | -67 | -43 |
| 2020 | 지방세 | 602 | 652 | 688 | -86 | -36 |
| | 세외수입 | 112 | 134 | 141 | -28 | -7 |
| | 합계 | 715 | 786 | 829 | -114 | -43 |
| 2021 | 지방세 | 613 | 685 | 741 | -128 | -56 |
| | 세외수입 | 133 | 210 | 212 | -79 | -1 |
| | 합계 | 746 | 896 | 953 | -207 | -57 |
| 평균 | 지방세 | 572 | 600 | 647 | -74 | -46 |
| | 세외수입 | 112 | 143 | 159 | -47 | -16 |
| | 합계 | 685 | 743 | 805 | -121 | -63 |

부록 4 | 연도별 B시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2017 | 지방세 | 804 | 878 | 915 | -111 | -37 |
| | 세외수입 | 96 | 150 | 159 | -62 | -9 |
| | 합계 | 901 | 1,028 | 1,074 | -173 | -45 |
| 2018 | 지방세 | 889 | 940 | 957 | -68 | -17 |
| | 세외수입 | 145 | 214 | 226 | -81 | -12 |
| | 합계 | 1,035 | 1,154 | 1,183 | -148 | -29 |
| 2019 | 지방세 | 897 | 1,045 | 1,088 | -191 | -43 |
| | 세외수입 | 136 | 208 | 214 | -78 | -5 |
| | 합계 | 1,033 | 1,253 | 1,302 | -269 | -49 |
| 2020 | 지방세 | 888 | 918 | 994 | -105 | -75 |
| | 세외수입 | 177 | 199 | 223 | -46 | -23 |
| | 합계 | 1,065 | 1,118 | 1,216 | -151 | -99 |
| 2021 | 지방세 | 931 | 971 | 1,149 | -218 | -178 |
| | 세외수입 | 142 | 214 | 226 | -84 | -12 |
| | 합계 | 1,073 | 1,184 | 1,375 | -302 | -190 |
| 평균 | 지방세 | 882 | 950 | 1,020 | -139 | -70 |
| | 세외수입 | 139 | 197 | 209 | -70 | -12 |
| | 합계 | 1,021 | 1,148 | 1,230 | -209 | -82 |

부록 5 | 연도별 C시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2017 | 지방세 | 846 | 940 | 963 | -116 | -22 |
| | 세외수입 | 156 | 157 | 175 | -18 | -18 |
| | 합계 | 1,003 | 1,097 | 1,137 | -135 | -40 |
| 2018 | 지방세 | 939 | 1,042 | 1,043 | -104 | -1 |
| | 세외수입 | 275 | 240 | 248 | 27 | -8 |
| | 합계 | 1,214 | 1,282 | 1,291 | -77 | -9 |
| 2019 | 지방세 | 1,041 | 1,070 | 1,094 | -53 | -24 |
| | 세외수입 | 172 | 170 | 176 | -4 | -6 |
| | 합계 | 1,213 | 1,240 | 1,270 | -57 | -30 |
| 2020 | 지방세 | 1,094 | 1,175 | 1,189 | -95 | -13 |
| | 세외수입 | 214 | 277 | 281 | -67 | -4 |
| | 합계 | 1,308 | 1,452 | 1,469 | -162 | -17 |
| 2021 | 지방세 | 1,142 | 1,445 | 1,473 | -331 | -29 |
| | 세외수입 | 234 | 566 | 606 | -373 | -40 |
| | 합계 | 1,376 | 2,010 | 2,080 | -704 | -69 |
| 평균 | 지방세 | 1,013 | 1,134 | 1,152 | -140 | -18 |
| | 세외수입 | 210 | 282 | 297 | -87 | -15 |
| | 합계 | 1,223 | 1,416 | 1,449 | -227 | -33 |

부록 6 | 연도별 D시 지방세 세외수입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2017 | 지방세 | 803 | 818 | 905 | -102 | -87 |
| | 세외수입 | 95 | 145 | 148 | -53 | -4 |
| | 합계 | 898 | 963 | 1,053 | -155 | -90 |
| 2018 | 지방세 | 951 | 1,087 | 1,150 | -200 | -63 |
| | 세외수입 | 114 | 144 | 145 | -32 | -1 |
| | 합계 | 1,064 | 1,231 | 1,296 | -231 | -64 |
| 2019 | 지방세 | 1,222 | 1,222 | 1,310 | -88 | -88 |
| | 세외수입 | 115 | 154 | 157 | -43 | -3 |
| | 합계 | 1,336 | 1,376 | 1,467 | -131 | -91 |
| 2020 | 지방세 | 1,121 | 1,068 | 1,079 | 42 | -11 |
| | 세외수입 | 131 | 176 | 180 | -49 | -4 |
| | 합계 | 1,252 | 1,244 | 1,259 | -7 | -15 |
| 2021 | 지방세 | 1,075 | 1,178 | 1,266 | -191 | -88 |
| | 세외수입 | 152 | 196 | 207 | -56 | -11 |
| | 합계 | 1,227 | 1,375 | 1,473 | -246 | -98 |
| 평균 | 지방세 | 1,034 | 1,075 | 1,142 | -108 | -67 |
| | 세외수입 | 121 | 163 | 168 | -46 | -5 |
| | 합계 | 1,156 | 1,238 | 1,310 | -154 | -72 |

부록 7 | 연도별 수원시 지방세목 예·결산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 2017 | 주민세 | 42.0 | 46.5 | 48.3 | -6.3 | -1.8 |
| | 재산세 | 194.3 | 204.0 | 206.0 | -11.8 | -2.0 |
| | 자동차세 | 139.7 | 152.0 | 156.1 | -16.4 | -4.1 |
| | 담배소비세 | 59.0 | 74.5 | 72.2 | -13.2 | 2.3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06.8 | 360.1 | 366.6 | -59.7 | -6.5 |
| | 지난년도수입 | 9.8 | 9.0 | 10.0 | -0.2 | -1.0 |
| | 합계 | 751.6 | 846.1 | 859.3 | -107.6 | -13.1 |
| 2018 | 주민세 | 45.2 | 48.8 | 49.9 | -4.7 | -1.1 |
| | 재산세 | 213.0 | 216.8 | 220.2 | -7.2 | -3.4 |
| | 자동차세 | 156.1 | 152.4 | 161.6 | -5.5 | -9.2 |
| | 담배소비세 | 71.0 | 65.7 | 70.0 | 1.1 | -4.3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85.9 | 507.5 | 523.8 | -137.9 | -16.3 |
| | 지난년도수입 | 8.5 | 9.0 | 4.2 | 4.3 | 4.8 |
| | 합계 | 879.7 | 1000.2 | 1029.6 | -150.0 | -29.5 |
| 2019 | 주민세 | 48.9 | 47.1 | 54.6 | -5.7 | -7.5 |
| | 재산세 | 216.6 | 234.8 | 239.6 | -23.0 | -4.9 |
| | 자동차세 | 157.5 | 147.3 | 145.7 | 11.8 | 1.6 |
| | 담배소비세 | 60.0 | 60.0 | 67.4 | -7.4 | -7.4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470.0 | 564.6 | 600.2 | -130.2 | -35.6 |
| | 지난년도수입 | 9.2 | 9.2 | 4.2 | 5.0 | 5.0 |
| | 합계 | 962.2 | 1063.0 | 1111.7 | -149.5 | -48.7 |
| 2020 | 주민세 | 47.6 | 47.6 | 54.5 | -6.8 | -6.8 |
| | 재산세 | 258.5 | 261.2 | 258.6 | -0.1 | 2.6 |
| | 자동차세 | 165.0 | 155.0 | 161.1 | 3.9 | -6.1 |
| | 담배소비세 | 66.5 | 66.5 | 72.2 | -5.7 | -5.7 |
| | 지방소비세 | 10.7 | 10.7 | 11.0 | -0.3 | -0.3 |
| | 지방소득세 | 335.2 | 379.0 | 430.7 | -95.4 | -51.6 |
| | 지난년도수입 | 7.2 | 0.0 | -14.1 | 21.3 | 14.1 |
| | 합계 | 890.7 | 920.0 | 973.9 | -83.2 | -53.9 |
| 2021 | 주민세 | 47.0 | 58.6 | 60.2 | -13.2 | -1.6 |
| | 재산세 | 262.0 | 270.0 | 280.3 | -18.3 | -10.3 |
| | 자동차세 | 151.0 | 170.0 | 183.3 | -32.3 | -13.3 |
| | 담배소비세 | 68.0 | 72.0 | 71.5 | -3.5 | 0.5 |
| | 지방소비세 | 10.6 | 10.6 | 11.0 | -0.4 | -0.4 |
| | 지방소득세 | 356.4 | 499.4 | 522.7 | -166.3 | -23.3 |
| | 지난년도수입 | 0.0 | 16.4 | 15.3 | -15.3 | 1.1 |
| | 합계 | 895.0 | 1097.0 | 1144.3 | -249.3 | -47.3 |
| 평균 | 주민세 | 46.1 | 49.7 | 53.5 | -7.4 | -3.8 |
| | 재산세 | 228.9 | 237.4 | 241.0 | -12.1 | -3.6 |
| | 자동차세 | 153.9 | 155.3 | 161.6 | -7.7 | -6.2 |
| | 담배소비세 | 64.9 | 67.7 | 70.6 | -5.7 | -2.9 |
| | 지방소비세 | 4.3 | 4.3 | 4.4 | -0.1 | -0.1 |
| | 지방소득세 | 370.9 | 462.1 | 488.8 | -117.9 | -26.7 |
| | 지난년도수입 | 6.9 | 8.7 | 3.9 | 3.0 | 4.8 |
| | 0합계 | 875.8 | 985.3 | 1023.8 | -147.9 | -38.5 |

부록 8 | 연도별 A시 지방세목 예·결산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 2017 | 주민세 | 15.1 | 15.1 | 17.1 | -2.0 | -2.0 |
| | 재산세 | 194.5 | 194.5 | 206.8 | -12.3 | -12.3 |
| | 자동차세 | 97.8 | 102.8 | 114.9 | -17.1 | -12.1 |
| | 담배소비세 | 56.0 | 56.0 | 58.1 | -2.1 | -2.1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115.5 | 127.6 | 160.5 | -45.0 | -32.9 |
| | 지난년도수입 | 21.6 | 21.6 | 19.5 | 2.1 | 2.1 |
| | 합계 | 500.5 | 517.6 | 576.9 | -76.4 | -59.3 |
| 2018 | 주민세 | 17.0 | 17.0 | 18.6 | -1.6 | -1.6 |
| | 재산세 | 206.0 | 206.0 | 218.8 | -12.8 | -12.8 |
| | 자동차세 | 111.0 | 111.0 | 132.8 | -21.8 | -21.8 |
| | 담배소비세 | 58.0 | 58.0 | 57.1 | 0.9 | 0.9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150.0 | 150.0 | 177.5 | -27.5 | -27.5 |
| | 지난년도수입 | 19.5 | 19.5 | 14.7 | 4.8 | 4.8 |
| | 합계 | 561.5 | 561.5 | 619.4 | -57.9 | -57.9 |
| 2019 | 주민세 | 18.5 | 18.5 | 19.5 | -1.0 | -1.0 |
| | 재산세 | 220.0 | 228.0 | 232.1 | -12.1 | -4.1 |
| | 자동차세 | 117.0 | 97.0 | 98.7 | 18.3 | -1.7 |
| | 담배소비세 | 51.0 | 51.0 | 54.5 | -3.5 | -3.5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157.0 | 169.0 | 182.5 | -25.5 | -13.5 |
| | 지난년도수입 | 21.0 | 21.0 | 19.8 | 1.2 | 1.2 |
| | 합계 | 584.5 | 584.5 | 607.1 | -22.6 | -22.6 |
| 2020 | 주민세 | 19.0 | 19.0 | 20.2 | -1.2 | -1.2 |
| | 재산세 | 230.0 | 240.0 | 246.7 | -16.7 | -6.7 |
| | 자동차세 | 118.0 | 133.0 | 141.3 | -23.3 | -8.3 |
| | 담배소비세 | 52.0 | 56.5 | 58.5 | -6.5 | -2.0 |
| | 지방소비세 | 10.3 | 10.3 | 10.4 | -0.1 | -0.1 |
| | 지방소득세 | 155.0 | 175.0 | 192.2 | -37.2 | -17.2 |
| | 지난년도수입 | 18.0 | 18.0 | 18.8 | -0.8 | -0.8 |
| | 합계 | 602.3 | 651.8 | 688.1 | -85.8 | -36.3 |
| 2021 | 주민세 | 19.0 | 19.0 | 22.0 | -3.0 | -3.0 |
| | 재산세 | 245.0 | 250.0 | 257.5 | -12.5 | -7.5 |
| | 자동차세 | 102.0 | 126.5 | 136.4 | -34.4 | -9.9 |
| | 담배소비세 | 54.5 | 58.0 | 59.9 | -5.4 | -1.9 |
| | 지방소비세 | 10.4 | 9.4 | 9.4 | 0.9 | 0.0 |
| | 지방소득세 | 162.0 | 202.4 | 237.0 | -75.0 | -34.6 |
| | 지난년도수입 | 20.0 | 20.0 | 19.1 | 0.9 | 0.9 |
| | 합계 | 612.9 | 685.3 | 741.3 | -128.4 | -56.0 |
| 평균 | 주민세 | 17.7 | 17.7 | 19.5 | -1.8 | -1.8 |
| | 재산세 | 219.1 | 223.7 | 232.4 | -13.3 | -8.7 |
| | 자동차세 | 109.2 | 114.1 | 124.8 | -15.7 | -10.8 |
| | 담배소비세 | 54.3 | 55.9 | 57.6 | -3.3 | -1.7 |
| | 지방소비세 | 4.1 | 3.9 | 4.0 | 0.2 | 0.0 |
| | 지방소득세 | 147.9 | 164.8 | 189.9 | -42.0 | -25.1 |
| | 지난년도수입 | 20.0 | 20.0 | 18.4 | 1.6 | 1.6 |
| | 0합계 | 572.3 | 600.2 | 646.5 | -74.2 | -46.4 |

부록 9 | 연도별 B시 지방세목 예·결산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 2017 | 주민세 | 31.9 | 33.9 | 35.8 | -3.9 | -1.9 |
| | 재산세 | 270.1 | 281.1 | 282.7 | -12.6 | -1.6 |
| | 자동차세 | 134.9 | 164.9 | 185.1 | -50.2 | -20.2 |
| | 담배소비세 | 48.0 | 48.0 | 47.9 | 0.1 | 0.1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01.4 | 332.4 | 344.4 | -43.0 | -12.0 |
| | 지난년도수입 | 18.0 | 18.0 | 19.0 | -1.0 | -1.0 |
| | 합계 | 804.3 | 878.3 | 914.9 | -110.6 | -36.6 |
| 2018 | 주민세 | 34.8 | 36.8 | 38.4 | -3.6 | -1.6 |
| | 재산세 | 279.8 | 290.8 | 292.7 | -12.9 | -1.9 |
| | 자동차세 | 154.1 | 127.1 | 128.6 | 25.5 | -1.5 |
| | 담배소비세 | 48.0 | 49.0 | 51.7 | -3.7 | -2.7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53.9 | 417.9 | 426.8 | -72.9 | -8.9 |
| | 지난년도수입 | 18.8 | 18.8 | 19.0 | -0.2 | -0.2 |
| | 합계 | 889.4 | 940.4 | 957.1 | -67.7 | -16.7 |
| 2019 | 주민세 | 37.9 | 37.9 | 41.7 | -3.8 | -3.8 |
| | 재산세 | 292.0 | 310.0 | 322.8 | -30.8 | -12.8 |
| | 자동차세 | 103.7 | 148.3 | 165.2 | -61.5 | -16.9 |
| | 담배소비세 | 47.5 | 47.5 | 48.6 | -1.1 | -1.1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93.6 | 478.6 | 485.1 | -91.5 | -6.5 |
| | 지난년도수입 | 22.3 | 22.3 | 24.5 | -2.3 | -2.3 |
| | 합계 | 897.0 | 1044.6 | 1087.9 | -190.9 | -43.3 |
| 2020 | 주민세 | 41.6 | 40.2 | 41.7 | -0.1 | -1.5 |
| | 재산세 | 320.0 | 335.0 | 341.6 | -21.6 | -6.6 |
| | 자동차세 | 107.7 | 124.0 | 132.6 | -24.9 | -8.6 |
| | 담배소비세 | 46.5 | 46.5 | 52.1 | -5.6 | -5.6 |
| | 지방소비세 | 10.7 | 10.7 | 10.8 | -0.1 | -0.1 |
| | 지방소득세 | 341.5 | 361.9 | 420.4 | -78.9 | -58.5 |
| | 지난년도수입 | 20.4 | 0.0 | -5.6 | 26.0 | 5.6 |
| | 합계 | 888.4 | 918.3 | 993.6 | -105.2 | -75.3 |
| 2021 | 주민세 | 38.5 | 38.5 | 48.0 | -9.5 | -9.5 |
| | 재산세 | 350.0 | 350.0 | 366.1 | -16.1 | -16.1 |
| | 자동차세 | 132.2 | 132.2 | 168.9 | -36.7 | -36.7 |
| | 담배소비세 | 47.3 | 47.3 | 53.3 | -6.0 | -6.0 |
| | 지방소비세 | 10.8 | 10.8 | 10.8 | 0.1 | 0.1 |
| | 지방소득세 | 332.0 | 372.0 | 488.9 | -156.9 | -116.9 |
| | 지난년도수입 | 19.7 | 19.7 | 12.9 | 6.8 | 6.8 |
| | 합계 | 930.5 | 970.5 | 1148.8 | -218.3 | -178.3 |
| 평균 | 주민세 | 36.9 | 37.5 | 41.1 | -4.2 | -3.7 |
| | 재산세 | 302.4 | 313.4 | 321.2 | -18.8 | -7.8 |
| | 자동차세 | 126.5 | 139.3 | 156.1 | -29.6 | -16.8 |
| | 담배소비세 | 47.5 | 47.7 | 50.7 | -3.2 | -3.0 |
| | 지방소비세 | 4.3 | 4.3 | 4.3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44.5 | 392.6 | 433.1 | -88.6 | -40.5 |
| | 지난년도수입 | 19.8 | 15.8 | 14.0 | 5.9 | 1.8 |
| | 0합계 | 881.9 | 950.4 | 1020.5 | -138.6 | -70.1 |

부록 10 | 연도별 C시 지방세목 예·결산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 2017 | 주민세 | 42.9 | 45.4 | 49.5 | -6.6 | -4.1 |
| | 재산세 | 252.9 | 268.5 | 265.0 | -12.1 | 3.5 |
| | 자동차세 | 119.4 | 127.8 | 133.9 | -14.5 | -6.2 |
| | 담배소비세 | 50.1 | 54.7 | 57.1 | -7.0 | -2.4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67.9 | 428.2 | 447.6 | -79.7 | -19.4 |
| | 지난년도수입 | 13.0 | 15.6 | 9.4 | 3.6 | 6.2 |
| | 합계 | 846.2 | 940.1 | 962.5 | -116.3 | -22.4 |
| 2018 | 주민세 | 48.4 | 52.0 | 53.2 | -4.8 | -1.2 |
| | 재산세 | 265.7 | 287.9 | 288.9 | -23.2 | -1.0 |
| | 자동차세 | 122.1 | 124.9 | 123.2 | -1.2 | 1.7 |
| | 담배소비세 | 55.5 | 51.9 | 54.4 | 1.1 | -2.5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434.5 | 519.4 | 518.3 | -83.8 | 1.2 |
| | 지난년도수입 | 12.9 | 6.0 | 5.0 | 7.9 | 1.0 |
| | 합계 | 939.1 | 1042.2 | 1043.0 | -103.8 | -0.8 |
| 2019 | 주민세 | 51.3 | 54.8 | 57.5 | -6.2 | -2.7 |
| | 재산세 | 298.8 | 317.6 | 322.0 | -23.2 | -4.4 |
| | 자동차세 | 120.9 | 124.4 | 130.5 | -9.5 | -6.1 |
| | 담배소비세 | 48.6 | 52.2 | 51.9 | -3.3 | 0.3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508.7 | 509.3 | 519.5 | -10.8 | -10.2 |
| | 지난년도수입 | 12.7 | 12.0 | 12.6 | 0.1 | -0.6 |
| | 합계 | 1041.1 | 1070.3 | 1093.9 | -52.8 | -23.6 |
| 2020 | 주민세 | 58.5 | 62.4 | 63.3 | -4.8 | -0.9 |
| | 재산세 | 326.4 | 355.3 | 356.0 | -29.6 | -0.7 |
| | 자동차세 | 127.2 | 128.7 | 121.2 | 6.0 | 7.5 |
| | 담배소비세 | 52.7 | 56.5 | 55.8 | -3.1 | 0.7 |
| | 지방소비세 | 8.1 | 8.5 | 8.5 | -0.4 | 0.0 |
| | 지방소득세 | 511.0 | 563.8 | 583.6 | -72.5 | -19.8 |
| | 지난년도수입 | 10.0 | 0.0 | 0.2 | 9.8 | -0.2 |
| | 합계 | 1094.0 | 1175.2 | 1188.6 | -94.7 | -13.4 |
| 2021 | 주민세 | 61.5 | 73.8 | 74.9 | -13.4 | -1.0 |
| | 재산세 | 363.5 | 417.5 | 419.4 | -55.8 | -1.8 |
| | 자동차세 | 127.7 | 124.5 | 126.4 | 1.3 | -1.9 |
| | 담배소비세 | 50.8 | 54.8 | 55.6 | -4.8 | -0.8 |
| | 지방소비세 | 7.0 | 9.7 | 9.7 | -2.7 | 0.0 |
| | 지방소득세 | 523.6 | 754.6 | 778.1 | -254.5 | -23.5 |
| | 지난년도수입 | 8.3 | 9.7 | 9.4 | -1.0 | 0.3 |
| | 합계 | 1142.4 | 1444.7 | 1473.4 | -331.0 | -28.8 |
| 평균 | 주민세 | 52.5 | 57.7 | 59.7 | -7.2 | -2.0 |
| | 재산세 | 301.5 | 329.4 | 330.3 | -28.8 | -0.9 |
| | 자동차세 | 123.5 | 126.1 | 127.1 | -3.6 | -1.0 |
| | 담배소비세 | 51.6 | 54.0 | 55.0 | -3.4 | -1.0 |
| | 지방소비세 | 3.0 | 3.6 | 3.6 | -0.6 | 0.0 |
| | 지방소득세 | 469.1 | 555.1 | 569.4 | -100.3 | -14.3 |
| | 지난년도수입 | 11.4 | 8.7 | 7.3 | 4.1 | 1.4 |
| | 0합계 | 1012.6 | 1134.5 | 1152.3 | -139.7 | -17.8 |

부록 11 | 연도별 D시 지방세목 예·결산 현황 및 오차

단위 : 억원

| 구분 | 당초(A) | 최종(B) | 결산(C) | A-C | B-C | |
|------|--------|--------|--------|--------|--------|-------|
| 2017 | 주민세 | 57.7 | 57.7 | 59.5 | -1.8 | -1.8 |
| | 재산세 | 216.0 | 216.0 | 229.5 | -13.5 | -13.5 |
| | 자동차세 | 99.7 | 99.7 | 114.8 | -15.0 | -15.0 |
| | 담배소비세 | 45.4 | 45.4 | 55.4 | -10.0 | -10.0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375.5 | 390.5 | 434.6 | -59.0 | -44.0 |
| | 지난년도수입 | 9.0 | 9.0 | 11.3 | -2.3 | -2.3 |
| | 합계 | 803.3 | 818.3 | 905.0 | -101.7 | -86.7 |
| 2018 | 주민세 | 64.3 | 64.3 | 66.6 | -2.3 | -2.3 |
| | 재산세 | 243.1 | 246.9 | 248.0 | -4.9 | -1.1 |
| | 자동차세 | 117.5 | 107.0 | 110.1 | 7.4 | -3.1 |
| | 담배소비세 | 58.8 | 55.3 | 57.6 | 1.2 | -2.3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458.6 | 602.7 | 658.2 | -199.6 | -55.5 |
| | 지난년도수입 | 8.3 | 11.3 | 9.9 | -1.6 | 1.4 |
| | 합계 | 950.6 | 1087.5 | 1150.4 | -199.8 | -62.9 |
| 2019 | 주민세 | 68.9 | 68.9 | 74.9 | -6.0 | -6.0 |
| | 재산세 | 251.7 | 251.7 | 274.5 | -22.8 | -22.8 |
| | 자동차세 | 113.9 | 113.9 | 150.1 | -36.2 | -36.2 |
| | 담배소비세 | 59.6 | 59.6 | 58.3 | 1.3 | 1.3 |
| | 지방소비세 | 0.0 | 0.0 | 0.0 | 0.0 | 0.0 |
| | 지방소득세 | 716.1 | 716.1 | 740.2 | -24.1 | -24.1 |
| | 지난년도수입 | 11.7 | 11.7 | 11.8 | 0.0 | 0.0 |
| | 합계 | 1222.0 | 1222.0 | 1309.8 | -87.9 | -87.9 |
| 2020 | 주민세 | 77.6 | 72.1 | 72.2 | 5.4 | -0.1 |
| | 재산세 | 285.4 | 297.1 | 299.5 | -14.1 | -2.4 |
| | 자동차세 | 122.3 | 106.9 | 107.4 | 14.9 | -0.5 |
| | 담배소비세 | 60.5 | 60.5 | 62.4 | -2.0 | -2.0 |
| | 지방소비세 | 10.5 | 10.5 | 9.3 | 1.2 | 1.2 |
| | 지방소득세 | 554.2 | 510.2 | 569.2 | -15.0 | -59.0 |
| | 지난년도수입 | 10.6 | 10.6 | -41.3 | 51.9 | 51.9 |
| | 합계 | 1121.1 | 1067.9 | 1078.7 | 42.3 | -10.8 |
| 2021 | 주민세 | 73.4 | 75.4 | 82.2 | -8.9 | -6.8 |
| | 재산세 | 304.5 | 304.5 | 318.0 | -13.5 | -13.5 |
| | 자동차세 | 111.3 | 133.3 | 140.1 | -28.8 | -6.8 |
| | 담배소비세 | 59.0 | 59.0 | 64.1 | -5.1 | -5.1 |
| | 지방소비세 | 10.5 | 10.5 | 9.6 | 0.9 | 0.9 |
| | 지방소득세 | 506.3 | 585.5 | 658.9 | -152.6 | -73.4 |
| | 지난년도수입 | 10.2 | 10.2 | -6.9 | 17.2 | 17.2 |
| | 합계 | 1075.2 | 1178.4 | 1266.0 | -190.7 | -87.6 |
| 평균 | 주민세 | 68.4 | 67.7 | 71.1 | -2.7 | -3.4 |
| | 재산세 | 260.1 | 263.2 | 273.9 | -13.8 | -10.6 |
| | 자동차세 | 113.0 | 112.2 | 124.5 | -11.5 | -12.3 |
| | 담배소비세 | 56.7 | 56.0 | 59.6 | -2.9 | -3.6 |
| | 지방소비세 | 4.2 | 4.2 | 3.8 | 0.4 | 0.4 |
| | 지방소득세 | 522.1 | 561.0 | 612.2 | -90.1 | -51.2 |
| | 지난년도수입 | 10.0 | 10.6 | -3.1 | 13.0 | 13.6 |
| | 0합계 | 1034.4 | 1074.8 | 1142.0 | -107.5 | -67.2 |

연구책임자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곽병욱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SRI-정책 2023-01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Characteristics of Tax Forecasting Error and Efficient Management Plan

발행인 정수진(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23년 03월 31일

발행 2023년 03월 31일

ISBN 979-11-6819-111-2

© 2023 수원시정연구원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정재진. 2023. 「수원시 | 세수추계 오차 발생 특징 분석 및 효율적 관리 방안」.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